



제 418회 국회 (정기회)
제7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해양오염 사전방지를 위한
장기계류·방치 선박 현장조사 실시〉
■ 임호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3862호

2024. 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최선영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해양오염 사전방지를 위한 장기계류·방치 선박 현장조사 실시	3

I. 제안경위

2024년 9월 10일 임호선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9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간 방치된 선박이나 계선 신고 후 계류 중인 선박 또는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감수·보존 선박 등(이하 “장기계류선박”이라 함)은 그 관리주체가 지방해양수산청 및 법원 등으로 상이하여 장기계류선박에 대한 관리 미흡으로 선박의 침수·침몰 등 사고 위험성이 높고 선박에 남아 있는 폐유의 유출 가능성이 커 해양오염사고의 위험요소로 지적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선박에서 해양오염이 발생하였거나 선박사고로 인하여 해양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만 선박에 출입하여 확인·점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장기계류선박으로 인한 해양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양경찰청장이 장기간 방치·계류된 선박 등 해양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해당 선박에 출입하여 확인
· 점검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양오염을 방지하여
해양환경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5조제4항).

Ⅲ. 검토의견

1. 해양오염 사전방지를 위한 장기계류·방치 선박 현장조사 실시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해양경찰청장이 장기계류 선박으로 인한 해양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선박에 출입하여 확인·점검하거나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를 검사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5조제4항).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5조(출입검사·보고 등) ① ~ ③ (생략)	제115조(출입검사·보고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박에서 해양오염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선박에 출입하여 확인·점검하거나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 ----- ----- ----- ----- <u>경우 또는 장기간 방치·계류된 선박 등 해양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u> ----- -----

⑤ ~ ⑦ (생략)	----- ----- -----.
⑤ ~ ⑦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115조제1항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선박에 출입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는 해양경찰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박에서 해양오염과 관련하여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선박에 출입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¹⁾와 시행령 제89조제5항에서 정하고 있는 긴급한 상황에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선박에 출입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1)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선박 현장조사 권한은 현행법 제1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어 현재 선박에 대한 현장조사는 해양경찰청장이 담당

[표] 관련 조문 정리

구 분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 법 제115조 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선박에 대한 출입검사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 <u>선박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u> 2. <u>대행기관으로부터 보고받은 자료의 검토결과 선박 또는 선박 관련 사업장·사무소에 출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u>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89조 제5항	○ 법 제115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u>선박에서 해양오염이 발생한 경우</u> 2. <u>선박사고로 인하여 해양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u> 3. <u>오염원인을 알 수 없는 해양오염이 발생하여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경우</u>

□ 그런데, 현행법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선박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를 보면 이와 같이 ①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경우에 연 1회 시행할 수 있는 정기조사의 성격을 지니며, ②해양오염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도 선박사고가 발생했거나, 해양오염이 발생한 경우 등 이미 긴급한 상황이 이루어진 이후여서 해양오염을 사전예방하는 측면에서는 효과가 부족한 점이 있음.

특히, 장기계류선박의 경우 관리 미흡 시 사고 위험성이 높고 선박에 남아 있는 폐유의 유출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장기계류

선박으로 인한 해양오염 유발 우려가 있는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또한, 최근 부산항 등 무역항 내 방치선박, 장기계류 선박***등이 159척에 이르고 있는데, 신고완료 되었으나 노후화된 선박의 장기계류가 지속될 경우 선체 침수나 기름유출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더욱 높은 상황임.

[표] 무역항 장기계류선박 현황

(단위 : 척, 2024년 8월기준)

구분	계	계선신고 선박	방치선박*	감수보존 선박**	장기계류 선박***
부산	176	17	13	4	142
인천	18	8	10	0	0
여수	4	1	-	1	2
마산	1	1	-	-	-
울산	15	15	-	-	-
동해	2	2	-	-	-
군산	17	16	1	-	-
목포	13	-	5	1	7
포항	1	-	-	-	1
평택	1	-	1	-	-
대산	-	-	-	-	-
계	248	60	30	6	152

* 방치선박 : 계선신고 등 행정행위 없이 무단으로 방치하여 6개월 이상 미운항 중인 선박

** 감수보존 선박 : 채무자 소유의 선박에 대한 강제경매신청 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선박을 감수하고 보존하기 위한 절차 중에 있는 선박

*** 장기계류 선박 : 선박검사기관에 계선사유서를 제출하였으나, 관리청에 계선신고는 하지 아니하고, 6개월 이상 미운항 선박

□ 이에 개정안은 해양경찰청장이 장기간 방치·계류된 선박 등 해양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에 대하여 현장조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장기계류선박 등 해양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발생원을 사전에 관리하고 해양오염물질의 배출을 예방함으로써, 해양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 및 재산 보호에 이바지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기존에 해양경찰청장이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긴급한 상황으로 규정된 경우는 이미 오염·사고 상황이 발생한 이후인 것과 다르게 개정안은 사전 예방을 위하여 선박을 현장조사한다는 점에서 침익적인 성격이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장기간 방치·계류된 선박²⁾으로 인한 해양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현장조사 실시 근거를 법상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음.

- 현행법 제115조제6항에 따르면 선박의 소유자 등 관계인은 공무원의 출입검사 및 자료제출·보고요구 등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129조제2항제15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장조사 실시 근거 관련 명확한 규정이 필요함.

2) 참고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는 ‘계류’의 정의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에는 ‘방치선박’에 관한 정의가 규정되어 있음.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계류”란 선박을 다른 시설에 붙들어 매어 놓는 것을 말한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방치선박”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가. 관계 행정기관에 휴업 또는 계선(繫船)신고를 하고 신고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도록 운항하지 않고 계류 중인 선박

나. 공유수면매립·간척사업 등과 관련하여 폐업보상을 받고 계류 중인 선박

다. 선박 또는 어선등록이 말소된 후 선체의 해체처리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선박

라. 그 밖에 전복·침몰·방치 또는 계류된 선박으로서 공유수면의 보호 및 효율적인 이용을 방해하거나 공유수면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공유수면관리청이 인정하는 선박

□ 이에 대하여 관계부처의 입장을 보면, 해양수산부는 장기 방치·계류 중인 선박의 관리 미흡 등으로 해양오염사고의 위험도가 높아 사전 점검을 통해 해양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지만, 선박의 계류기간에 따라 조사대상을 한정하는 것은 입법 취지 달성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해양경찰청은 선박에 대한 현장조사를 집행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이 해소되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 개정안을 수용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418

첨부 1

참고 조문 정리

구 분	
「해양환경관리법」 제115조제1항	○ 해양수산부장관은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u>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선박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 및 연료유를 확인·점검하게 할 수 있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 법 제115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선박에 대한 출입검사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 <u>선박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u> 2. <u>대행기관으로부터 보고받은 자료의 검토결과 선박 또는 선박 관련 사업장·사무소에 출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u>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 제1항제1호에 따른 선박에 대한 출입검사·보고는 각 선박에 대하여 <u>연 1회</u>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선박사고 등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양환경관리법」 제115조제4항	○ 해양경찰청장은 <u>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u> 선박에서 <u>해양오염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긴급한 상황</u> 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선박에 출입하여 확인·점검하거나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89조제5항	○ 법 제115조제4항에서 “ <u>대통령령이 정하는 긴급한 상황</u> 이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u>선박에서 해양오염이 발생한 경우</u> 2. <u>선박사고로 인하여 해양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u> 3. <u>오염원인을 알 수 없는 해양오염이 발생하여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경우</u>
「해양환경관리법」 제123조제1항	○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은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u>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다른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94조제2항	○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2. <u>법 제115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선박의 출입검사와 보고 등의 명령</u>